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756 발의연월일: 2021. 3. 12.

발 의 자:이철규・이양수・이주환

김정재 · 한무경 · 엄태영

정운천 · 윤창현 · 최형두

구자근 • 권명호 • 김도읍

양금희 · 장제워 · 유영석

유상범・강기윤 의원

(17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재산권은 헌법 제23조에 보장된 권리이고 그 제한은 공공 필요에 의하며 법률로써 제한하고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코로나19의 확산 방지 차원에서 현행법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 제한 조치가 시행 중이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피해에 대한 보상은 관련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음.

특히, 2020년부터 본격 확산된 코로나19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강화 조치에 따라 집합 금지 및 제한 업종의 소상공인 자영업 자는 대규모 손실 발생과 생계 위협 등 전례가 없을 정도의 막대한 고통을 겪고 있고, 향후 발생할 유사 감염병 사례를 대비하는 차원에 서라도 정부의 조치에 따른 정당한 지원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이에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의집합 금지 및 제한 조치 기간 동안에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보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 등을 보호하고 헌법정신을구현하고자 함(안 제12조의4 신설).

법률 제 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4(감염병 재난에 따른 손실보상) ① 정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른 영업제한 집합금지 또 는 집합제한 명령 조치로 인해 그 기간 동안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 공인 등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손실보상 대상, 손실액 산정, 규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전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으로 동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 명령의 기간 동안에 영업 손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의 손실에 대해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의4(감염병 재난에 따른
	손실보상) ① 정부는 「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제49조제1항에 따른 영업
	제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명령 조치로 인해 그 기간 동
	안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
	<u> 여야 한다.</u>
	② 손실보상 대상, 손실액 산
	정, 규모, 절차 및 방법 등 구
	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u> 정한다.</u>